**아이티엠반도체 공급망 가이드라인**

1. 노동 인권

아이티엠반도체의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가 공정하고 윤리적인 작업장에서 근무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차별 금지

협력사는 고용이나 기타 고용 관련 업무 시 연령, 장애, 성별, 인종, 종교, 민족, 국적, 결혼 여부,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정치 성향, 노조 가입 여부, 기타 국가 또는 지역 법이 보호하는 상태를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3. 가혹 행위 금지

협력사는 회사내에서의 가혹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언어 폭력, 정신적 괴롭힘, 심리적 및 신체적 강요, 성희롱 등의 가혹행위와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거나 이러한 대우를 수단으로 근로자를 위협하지 않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4.비자발적 노동 금지

협력사의 모든 노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미성년자 노동 금지

협력사는 만 15세, 법정 최소 근로 연령, 의무 교육 종료 연령 중 가장 높은 기준보다 나이가 많은 근로자만 고용해야 한다.

6. 고충 관리

협력사는 근로자들이 불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효과적인 수단을 갖춰야 한다.

7.보건 및 안전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8.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화학물질 공정 및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9.폐기물 관리

협력사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립 폐기물을 식별하고 관리해야 하며 지속적인 감축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0.대기 오염 관리

협력사는 작업으로 인한 대기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이 예상될 경우는 대기 오염 제어 장치를 설치하여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11.온실가스 배출 관리

협력사는 작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저감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협력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2. 긴급 상황 대비 및 대응

협력사는 작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긴급상황을 식별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절차 및 대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3. 윤리

협력사는 사업 관계, 실천 방식, 조달, 운영 등 사업의 모든 측면에서 항상 윤리적이어야 하며 이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4. 책임 있는 자원 조달

협력사는 공급망 내에서 사용하는 소재 조달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 감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분쟁지역에서의 강제노동, 아동 노동으로 인하여 생산된 자원을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